

체별 등의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표 IV-42> 가정폭력 존재 여부 및 빈도(학생/학부모)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월1회	주1회	일1회	
학생	13.2			86.8
	11.1	3.8	2.1	
학부모	11.3			88.7
	10.5	1.7	1.1	

<표 IV-43> 가정폭력 존재 여부(학교급별) (단위 %)

가정에서의 체별 등 학생 설문 결과	있다	없다
초등학교	13.5	86.5
중학교	14.7	85.3
인문계고	11.4	88.6
특성화고	11.3	88.7
특목고	17.3	82.7

설문결과 13.2%의 학생이 가정 내에서의 체별 및 언어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 내 체별에 대한 설문이 경험형이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해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상당수의 학생이 가정에서의 체별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특이한 것은 특수목적고 학생의 경우 가정 내 체별 등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특수목적고의 경우 표본 집단의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점, 특수목적고 학생들의 체별 등에 대한 감수성의 정도 등 여러 변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학원에서의 체별 등의 문제는 사실 학부모의 인권의식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가정에서의 체별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학원에서의 체별 등의 상황은 바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

기되는 대목이다.

한편, 면접조사 초기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체별은 문제가 없다는 학부모도 대부분 자체 논의의 진행과정에서 그 문제의식에 공감하여 갔다. 이러한 점을 상기한다면 학생인권과 관련한 학부모 인권교육 역시 일방적인 지식 전달 형식의 교육이 아닌 학생인권문제에 대하여 학부모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갈 수 있는 형태의 프로그램의 마련과 진행이 적합하며 필요하다.

제6절 인권교육

- 연차 분석 결과 인권교육의 효과는 항상 추세에 있다.
-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경우 학교 현실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아직도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지 못하고 있었다.
- 향후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인권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제28조 경기도 학생인권의 날

-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기도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원 및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제29조 **홍보** 교육감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 등 학생의 인권에 대한 설명서와 교육용 교재를 일반인용, 중·고등학생용, 초등학생용으로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 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 ① 학교는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학생 아르바이트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근로권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 학교는 교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원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1조 교원에 대한 인권 연수 및 지원

- ①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각종 연수에 학생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학교의 인권교육과 교원 연수를 위한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32조 보호자 교육

- ① 학교는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1. 학생 인권교육

<표 IV-44> 인권교육 시행 여부 및 유형(그룹별)

(단위 %)

구분	한다					안한다
학생 답변	77.2					22.8
	외부강사강의	가정통신문	수업시간	재량활동시간	사이버교육	
	31.3	19.9	17.4	15.6	15.8	
교사 답변	95.6					4.4
	외부강사강의	가정통신문	수업시간	재량활동시간	사이버교육	
	24.9	28.0	9.5	27.8	9.8	

<표 IV-45> 인권교육 유형(연도별)

(단위 %)

연도	대상	외부강사	가정통신문	인권수업	재량활동	동아리	사이버	없음
		2011	학생	22.9	26.9	13.2	11.9	4.7
	교사	19.7	30	17.5	17.2	2.7	12.1	0.8
2012	학생	30	23.2	9.9	10.6	-	14.9	11.4
	교사	25.6	31.4	14.5	13.8	-	13.6	1.2
2013	학생	31.3	19.9	17.4	15.6	-	15.8	-
	교사	24.9	28	9.5	27.8	-	9.8	-

인권교육을 실시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학생과 교사 간의 인식상 괴리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집단면접조사 내용을 참작하면 학생들의 경우 실제로 인권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권교육인지 여부를 혼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학교현실상 인권교육이 대형 강의 형식으로 진행되거나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행해지는 데에서 오는 한계로 지적된다.

인권교육이란 적절한 교육기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회에서 보편적인 인권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절한 지식과 바람직한 태도를 갖고 행동할 수 있도록 구성원을 교육하고 정보를 확산시키는 종합적인 노력을 말합니다. '인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에서부터 어떻게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고 침해로부터 예방하며 비폭력적인 인권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 그리고 인권을 인권 친화적인 방법으로 가르침으로써 개인과 사회를 변혁시키는 종합적인 교육을 의미합니다(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해설서).

인권교육은 인권 일반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학생인권의 구체적인 상황 즉 실태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강당이나 체육관에 학생들을 집합시켜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진행하는 인권교육은 지양해야 한다. 자율적인 인권 학습활동은 형식적이고 성과주의적인 활동이 아닌 실제적인 학습 활동을 의미한다. 인권 학습은 학생 스스로 자신의 인권을 알아가고 이를 통해 인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해설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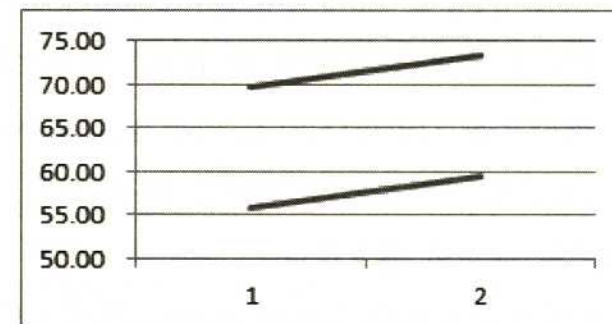
위의 각 조례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인권교육은 진행자와 학생들이 소통할 수 있는 구조로 진행되어야 한다. 위에서 '인권 친화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모두가 하나의 교육 주체로 진행되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권에 대하여 함께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인권의 진정한 의미를 공유해갈 수 있는 학생인권교육 프로그램의 마련이 시급하다.

<표 IV-46> 인권교육 영향 평가(학생/교사)

(단위 %)

연도	대상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평점
		2012	학생	13	24.4	43.8	10.8
	교사	20.2	46.6	27.3	3.9	1.9	69.78
2013	학생	16.7	26.8	40.6	9.1	6.8	59.38
	교사	25.3	47.9	22.6	2.9	1.2	73.25

<표 IV-47> 인권교육 영향 평가(연도별/그룹별)



(2012-2013)

- 교사 - 학생

인권교육의 효과에 대하여는 전년도 대비 상당히 향상된 결과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그 방법과 내용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점차 향상될 것을 기대한다.

2. 학부모 인권교육

<표 IV-48> 학부모 인권교육 시행 여부 및 유형(교사/학부모)

구분	한다					안한다	(단위 %)
	외부강사강의	가정통신문	수업시간	재량활동시간	사이버교육		
교사 답변	89.1					10.9	
학부모 답변	72.9					27.1	
	25.8	61.8	-	-	25.8		

<표 IV-49> 학부모 인권교육 영향 평가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평점	(단위 %)
14.6%	36.2%	40.6%	5.7%	2.8%	63.5	

학부모 역시 학생과 마찬가지로 인권교육의 실시여부에 대하여 교사와 상당한 괴리감이 있었으며, 가정통신문의 비율이 가장 높다(특히 특목고의 경우에는 71.9%에 이르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인권교육의 효과에 대하여도 학부모들은 후한 점수를 주지 않았다.

실제 학부모들의 경우 따로 시간을 내어 인권교육을 진행하기에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앞서 학원과 가정의 체벌 문제에서 보았듯이 학부모의 인권의식이 자녀의 인권보장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그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부모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방식으로 학부모의 인권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하다.

집단면접조사의 경우 참여 학부모들의 특성이 있기는 하나, 조사 후 학부모 대상 인권교육을 진행하여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통이 가능한 소규모 단위의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부모들이 스스로 인권의 개념과 범주를 찾아갈 수 있도록 세팅하는 것이 적합하다.

3. 교사 인권교육

<표 IV-50> 교사 인권연수 실시 여부

		(단위 %)	
		그렇다	아니다
		94.2	5.8

학교에서의 학생인권 연수를 실시한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집단면접조사시 교사들과 면담 내용을 보면, 학생인권과 관련한 전담교사로부터 전달받는 형식이 많다 보니 실제적인 연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가지는 고민의 수치들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됨에도 이러한 고민들을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장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소그룹 단위로 자신들의 고민을 공유하고 풀어갈 수 있는 커뮤니티의 활성화와 교육 프로그램의 지원 등이 시급하다고 본다.

4. 학생인권옹호관제도

제39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

제41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3.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 권고
4.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에 대한 공표
6. 기타 위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인권옹호관은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 제3자가 한 조사청구에 대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나 상담이 청구될 당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조사청구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4. 그 밖에 학생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표 IV-51> 학생인권옹호관제도 인지 여부(그룹별)

구분	(단위 %)					평점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학생	15.6	24.9	38.8	12.4	8.3	56.8
구분	잘 알고 있으며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잘 안다	-	들은바는 있으나 잘 알지 못한다	들은바 없다	-
교사	8.7	33.9	-	40.0	17.4	44.6
학부모	5.7	15.6	-	50.5	28.3	32.8

학생인권옹호관제도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인식의 정도가 낮았다. 집단면접조사 결과 상으로는 학생들의 경우 제도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았으며, 향후 학생인권정책 전반에 대하여 교사집단에 대한 멘토링의 역할이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경우 조차 제도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이 아쉬운 점이었다.

제7절 교사 직무피로도¹¹⁾에 대한 관계분석

- 교사들의 직무 피로도는 학생인권에 관련된 여러 요소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성을 보여준다.
- 또한 교사들의 피로도는 학교장의 교사의견 경청이나 교사의 학생인권 주체성의 인정 여부와 매우 밀접한 관계성을 보여준다.
- 학생인권의 질적/양적 향상을 위해서는, 교사들을 학교행정을 포함하여 학생 인권 활동의 중요한 주체로서 초대하여야 한다.

상관관계의 전후의 판단은 각 요인별로 다르므로 각각 별도로 판단해 보겠지만, 설문조사결과 교사들의 직무피로도와 학생인권의 여러 문제는 아래의 표와 같이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11) 교사의 직무피로도 조사는 직무피로도의 표준조사방법중 하나인 MBI(Maslach Burnout Inventory)의 교육자용 버전(MBI-Educator Survey)을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원 교사용 직무 피로도 설문 문항은 1) 감정피로도 9문항, 2)관계 비인격화 5문항, 3) 직무성취도 감소 8문항으로 총 2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간이로 각 부문별 대표 문항(감정피로도 2개 문항, 비인격화 1개 문항, 직무성취도 2개 문항)을 비례적으로 구성한 5개 문항으로 간이 조사하였다. 직무피로도 수치는 5개 문항의 합계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 Maslach, C., Jackson, S. E., & Leiter, M. P. (1996). The Maslach Burnout Inventory (MBI). Third edition,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MBI-Educator Survey. (2010). <http://www.mindgarden.com/>

<표 IV-52> 교사 피로도에 의한 학생인권 확산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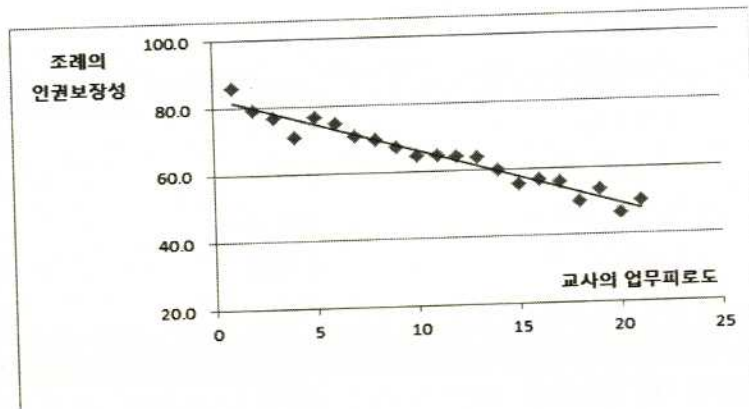
	확산 항목	R ²	기울기
1	조례인권보장	0.9552	-1.7
2	학생차별	0.6607	-0.8
3	학습권	0.7328	-1.1
4	야자/보충 선택	0.8132	-1.5
5	급식위생	0.7328	-1.1
6	소수학생인권보장	0.8892	-1.5
7	학생간 폭력발생	0.913	-1.7
8	학생간 언어폭력 발생	0.8041	-1.3
9	학생회 주관 활동	0.6485	-1.5
10	벌점, 징계 설명	0.7172	-0.8
11	의견진술권	0.7055	-0.9
12	교사 체벌	0.2958	0
13	교사 언어폭력	0.6637	0
14	인권교육효과	0.9132	-2.5

- R²은 두 요소간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0과 1사이의 값을 가진다. 0은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나타내며, 1은 직접적으로 1:1 관계를 가짐을 나타낸다.
- 기울기는 절대값의 크기가 클수록, 학생인권의 각 요소에 영향을 주는 효과가 크다.

1. 교사의 직무피로도와 조례의 인권보장성

먼저 교사의 직무피로도와 학생인권조례의 학생인권보장성 간의 상관관계는 상당히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직무피로도가 높을수록 조례의 학생인권보장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인권보장성에 대한 설문이 교사의 인권감수성을 가늠할 수 있는 항목이라는 점에서 직무피로도가 높을수록 인권감수성 또한 떨어진다는 경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물론 선후의 인과관계로 두 요인이 작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교사의 인권감수성이 떨어질수록 직무피로도가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 어쨌든 교사의 직무피로도와 인권감수성은 서로 밀접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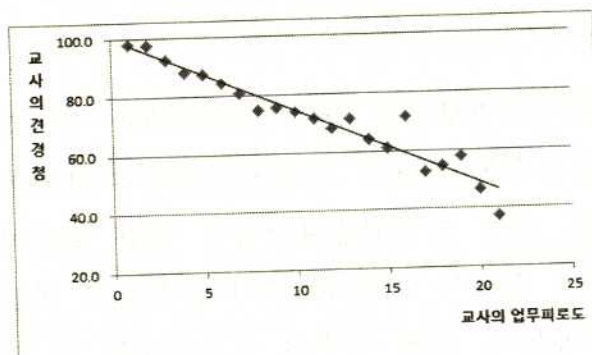
<표 IV-53> 조례 영향 평가와 교사 직무피로도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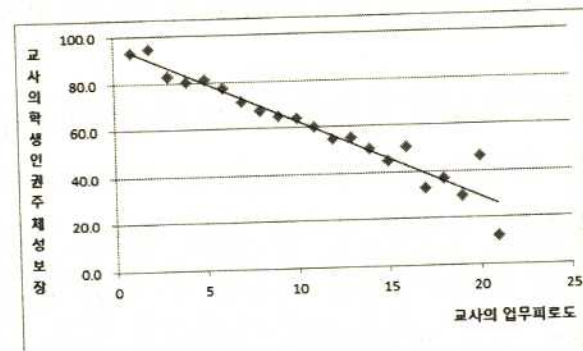
2. 교사의 의견 경청 및 학생인권 주체성 인정과 직무피로도

아래와 같이 교사의 학교운영 참여도나 교장의 교사의견 경청의 정도가 낮을수록, 학생인권 증진의 한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수록 교사의 직무피로도는 비례하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표 IV-54> 학교장의 교사 의견 경청도와 직무피로도



<표 IV-55> 교사의 학생인권주체성 보장과 직무피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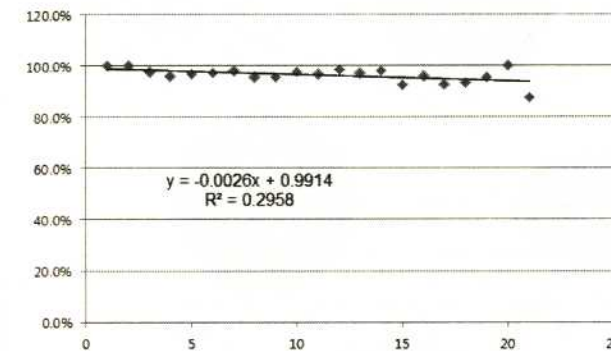


인권의 문제는 개인이 하나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균열이 생기는 것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학교에서 교사 자신들의 주체성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스스로의 인권역량을 증진, 유지하고 이를 토대로 학생들을 인권적으로 지도한다는 것은 당연히 어렵다. 따라서 향후 교사들을 학교 인권에서의 한 주체로 인정하고 그들의 인권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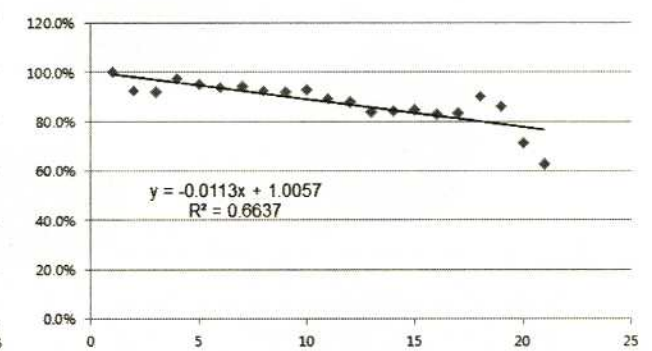
3. 교사의 직무피로도와 체벌 등

특이한 사항은 교사의 직무피로도와 체벌 및 언어폭력에 대한 설문결과의 상관관계이다. 두 가지 측면 모두 다음과 같이 교사의 직무피로도 간에 별로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에 대해서 향후 심층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표 IV-56> 교사의 체벌과 직무피로도 상관관계



<표 IV-57> 교사의 언어폭력과 직무피로도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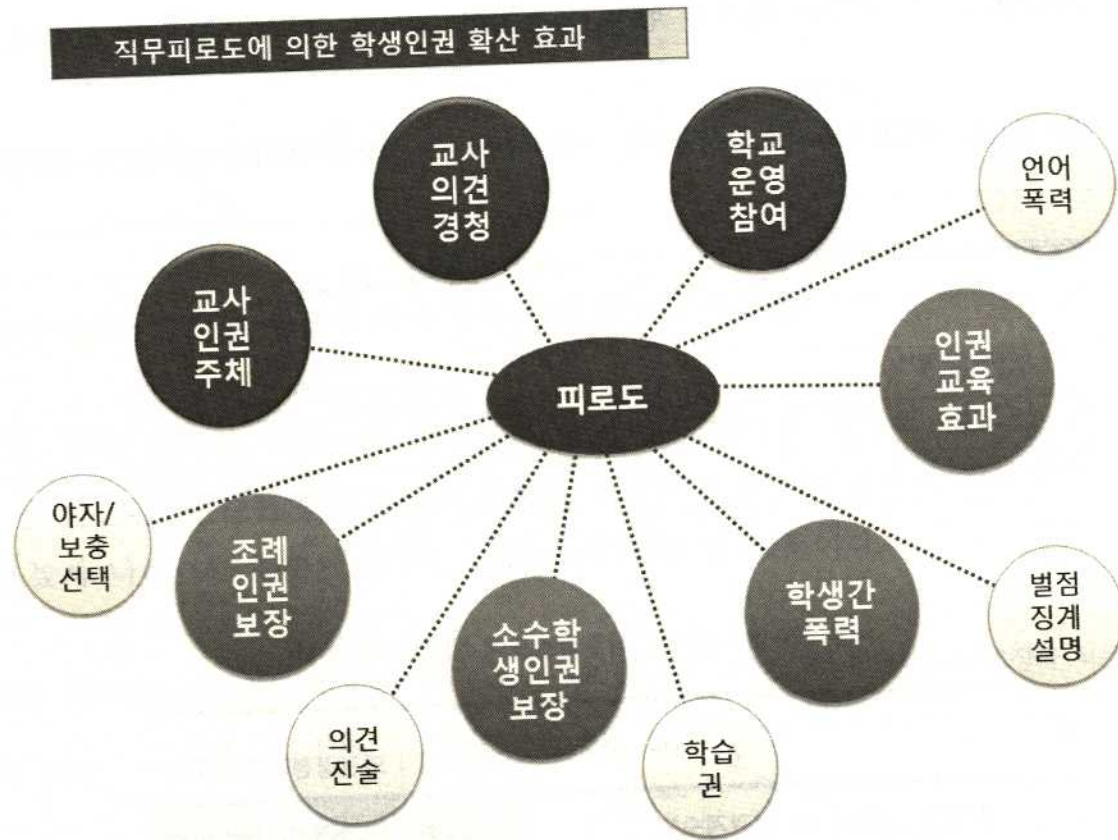
<표 IV-58> 교사의 직무피로도에 대한 교차 분석

		피로도	조례 인권보장	교사 의견경청	교사 인권주체
피로도	Pearson 상관계수*	1	.241	.331	.416
조례 인권보장	Pearson 상관계수	.241	1	.190	.333
교사 의견경청	Pearson 상관계수	.331	.190	1	.441
교사 인권주체	Pearson 상관계수	.416	.333	.441	1

* Pearson 상관계수는 등간격조사 항목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수치이며, 절대값이 1에 가까울수록 직선적 관계이다.

4. 종합

위에서 서술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IV-1> 직무피로도에 의한 학생인권 확산 효과

전후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교사들의 직무피로도에 교사들의 의견 경청이나 학교운영참여, 주체로서의 인정과 신뢰관계 등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학교 내의 소통과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피로도와의 연관 조사를 정리하면, 직무피로도가 높은 교사일수록 조례의 인권 보장성을 낮게 평가한다는 점에서 교사의 직무피로도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학교에서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의 의견을 학교장이 얼마나 경청하고 반영해주는가, 교사들이 학생인권의 주체로서 인정되는가, 교사들이 학교 행정 전반에 참

여하는가 등의 학교 내에서의 교사들에 대한 인정과 신뢰가 교사의 직무피로도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와 교육행정당국은 이러한 점에 대해 인식하고, 학생인권의 중요한 축으로서 교사를 초대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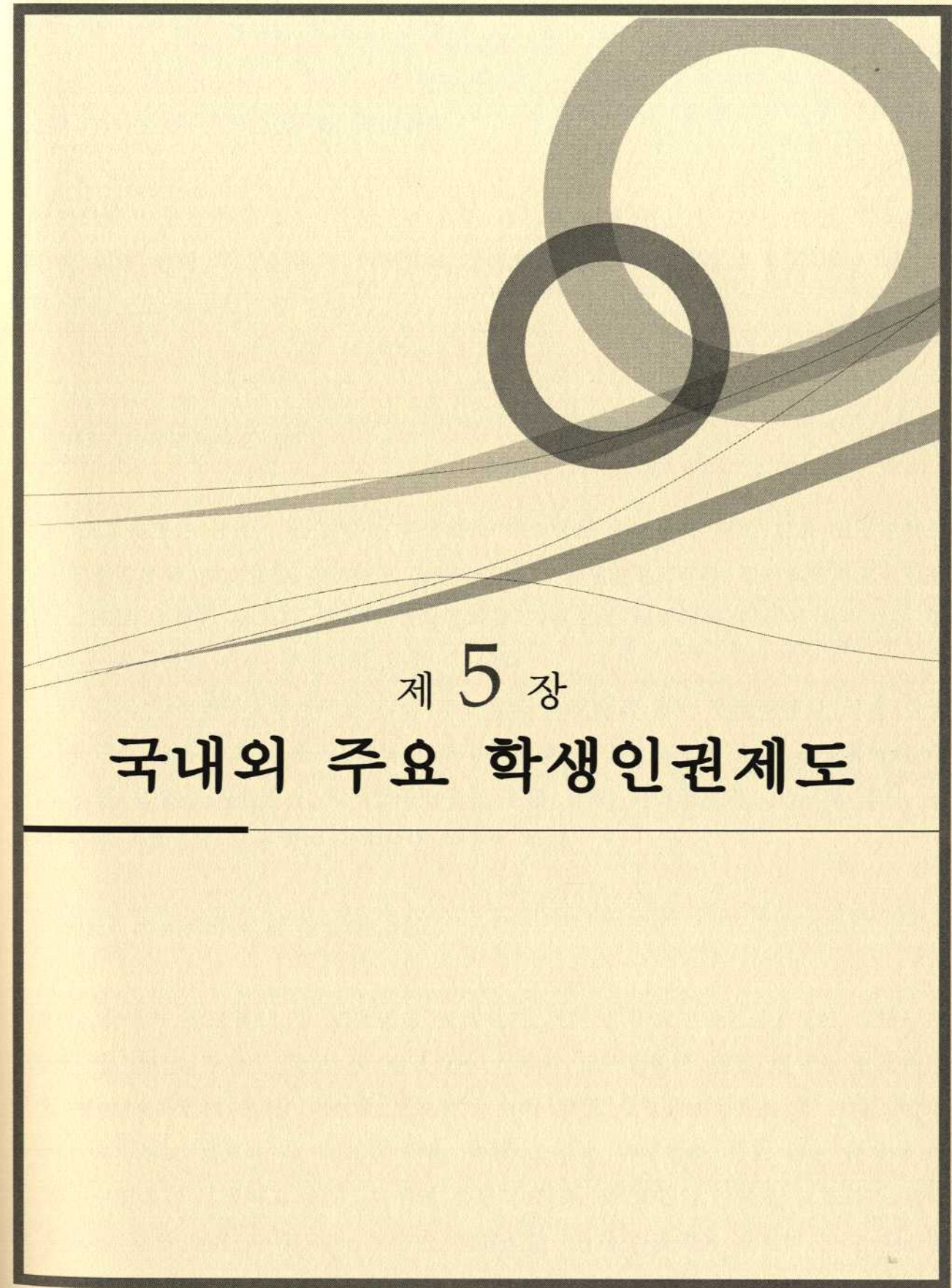
이외에도 집단면접조사에서 많은 교사들이 교사 1인 당 전담 학생 수¹²⁾가 적절한 수로 줄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대략적인 경기도내 학생당 교사의 수에 대한 비교에서 보듯이, 학생당 제공되는 자원의 차이가 크며, 이로 인한 업무 부담과 학생과의 관계성 등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행정 업무 과다, 학생 지도의 부담 등의 문제로 인한 업무피로를 호소하였다. 이런 문제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함께 이를 개선할 방안이나 정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표 IV-59> 학생 100명당 교원 수

	초등학교	중학교	인문계고	특성화고	특목고
학생 수	739,619	458,221	372,216	62,920	13,316
교원 수	41,962	27,210	24,904	5,008	1,119
교원/학생	5.67	5.94	6.69	7.96	8.40

(출처: 2013 경기교육 정책자료집, 경기도교육청)

12) 교사당 학생수에 따라, 학생 지도나 학생 인권 각 요소에 대한 연관관계가 어떠한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제 5 장
국내외 주요 학생인권제도

제 5 장 국내외 주요 학생인권제도

제1절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국내제도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 관련 제도의 실태를 크게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인권교육 실태와 학생들의 자치권 보장을 위한 자치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경기도 인권교육제도 전반

경기도교육청은 공공적 공동체적 혁신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평화 인권친화적인 학교공감문화 시스템을 강조하고 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경기도평화교육원장 제정 공포로 조성된 평화와 인권의 공감문화를 기반으로 세계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각급 학교 학생인권실천계획을 각급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권과제를 크게 학생의 자유권적 인권 보호와 증진, 학생의 사회적 문화적 인권보호와 증진, 소수학생에 대한 교육권 보장과 차별금지, 학생인권진흥을 위한 활동, 학생인권의 상담 및 조사, 구제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생의 자유권적 인권 보호와 증진

첫째, 학생의 학교생활 및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학교생활인권규정에 체벌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방과후 학교 등 정규과목 이외의 교육활동에 관한 선택을 보장하고 있다. 학생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학생 개인정보서비스 및 교내 CCTV 운영의 개인정보 보호나 각 학교별 두발, 복장, 소지품, 휴대전화 사용 관련 규제에 대해 개성실현권을 보장하고 있다. 학생의 정신적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각 학교의 학생 언론 매체(교지, 방송반, 학교신문 등)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각 학교별

홈페이지를 통한 학생 여론 수렴 절차와 자유게시판의 적정 운영을 권장하고 있다.

둘째, 학생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긴급구제 절차 완비,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정기적 실시(학기당 1회), 학교폭력실태조사 정기적 실시(분기별 1회),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의 분기별 1회 이상 실시를 권장하고 있다.

셋째, 학생 자치 및 참여, 적법절차 보장을 위해 학생자치 및 참여권을 보호하고 있는데, 학교내 학생자치회활동의 실질적 보장, 학생 자치 능력 보장을 위한 공간적,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학생 중심의 학생자치회 소집, 운영권 보장, 학생자치능력향상 지원을 위한 지도교사 배치 및 학생대표 연수 강화, 학교 생활인권규정 제개정시 민주적 학생참여 보장, 학교장과 학생대표와의 정기적 면담을 권장하고 있다.

징계 등에서의 적법절차를 보장하고 있는데 상벌점 항목 및 부과 내용 결정 시 학생 참여권 보장, 상벌점 항목 및 부과 시 교사별 자의성 최소화, 맞춤형 학생상담지원 등 학생지도 방안 지원, 학교별 징계 절차 내 적법절차 준수 여부 및 징계사실의 공표 금지, 학생 선도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기록에서의 해당 당사자에 대한 기록 보관 및 학생부 등재 정비, 맞춤형 학생상담제의 도입 등 상벌점제에 대한 의존도를 조정하는 학생지도 방안을 권하고 있다.

2) 학생의 사회적, 문화적 인권 보호와 증진

첫째,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적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차별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규정에 따라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교육을 강화한다.

둘째, 학생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학교 교실 내 탈의실을 정비하거나 학교 교육시설 환경(책걸상, 운동장, 화장실, 냉난방 등)에 대한 학생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저학년 및 장애학생을 위한 수저 등 급식 장비를 개선하거나 특이체질,

종교, 채식 등을 이유로 한 급식배려 대상 학생에 대한 사전조사와 강제 급식을 금지와 같은 급식 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비만, 정신건강, 흡연예방, 질병예방 프로그램 운영, 학교별 맞춤형체력인증제 도입, 자살 위험군 등 긴급구제 대상 학생의 사전 치유를 위한 위기관리시스템 운영 강화와 같은 학생 치료와 관련된 건강권을 보장한다.

셋째, 자발적 학생 전시 및 공연 지원, 예술체험 기회 제공 확대,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위한 동아리실 확보, 지역사회 문화활동에의 참여 보장, 학교내 학생문화활동 관련 시설(강당, 체육관, 교육관 등) 학생이용 확대 등 학생의 적극적인 문화활동을 권장한다.

3) 소수학생에 대한 교육권 보장과 차별금지

첫째, 소수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장애학생의 자립생활 능력 함양을 위한 진로 및 직업교육 강화, 특수교사의 학교 내 전문성 존중 및 의견 반영을 위한 제도적 정비, 장애학생의 교육접근성 확보를 위한 인적 물적 편의제공 구축 체계 정비, 장애학생 차별금지를 위한 제도 정비, 장애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강화, 학교 교육비 등 학생 대상 지원 절차에서의 학생정보 보호와 같은 활동을 적극 권장한다.

둘째, 다문화 가정의 동반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도입에 따른 최소 학습권을 보장하거나, 전문계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 강화(희망의 인문학 강좌, 상담프로그램 확대, 인권 및 노동인권 교육의 확대 및 상설화, 동아리 활동 지원 강화)한다. 덧붙여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심리치유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한 학교 환경을 구축한다.

4) 학생인권진흥을 위한 활동

첫째, 매년 10월을 학생인권의 달로 운영하여 학생인권 신장을 통한 소통과 나눔의

학생문화를 조성하고, 학생인권의 달 기념식 및 학생중심의 문화 축제, 학생인권의 달 계기교육 실시로 학생인권의 날 행사를 활성화한다.

둘째,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인권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연계 교육 계획을 수립(학기당 2시간 이상), 취업준비 학생 대상 노동인권교육 실시 의무화, 교사의 인권인식 전환을 위한 인권에 관한 교원연수 연2회 이상 실시,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실시, 장애 등 소수학생 인권 교육 강화, 학교별 교사대상 인권연수를 위한 연간 운영계획의 수립을 권장하고 있다. 학부모 대상 인권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 보호자 및 시민교육 홍보를 적극 권장한다.

5) 학생인권의 상담 및 조사, 구제에 관한 사항

학생인권을 상담하고 구제하기 위해 교사 연수시 학생인권옹호관 및 청원권 제도를 소개하거나 홍보포스터 및 리플릿을 게시하여 학생인권옹호관 제도와 청원권에 대해 교육공동체가 인식하도록 하고 권리구제 신청 및 청원 행사 학생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다.

2. 교육 주체별 인권교육 추진 상황

위와 같은 세부사항과 더불어 2013년도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인권교육을 교육공동체인 교사, 학생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사

첫째,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인권인식의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온·오프라인 인권연수가 실시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친인권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원 사이버 인권교육과정을 성차별 예방과정(15시간-남녀평등과 성차별의 의미와 형태, 권리구제제도, 성차별과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의 관계, 장애차별 예방과정(15시간)-장애

차별과 유형, 장애인 복지 서비스권, 노동권, 교육권, 정보 접근권, 문화권, 차별 관련 법, 권리구제, 선생님을 위한 인권+(15시간)-인권이란?, 나의 인권 감수성은,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하여, 작은 권리 알고 지키기, 인권기관을 찾아서와 같은 3가지 연수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하였다.

둘째, 경기도교육청은 2013 학생인권 및 상담 사이버 연수를 추진하고자 학생인권 8시간, 상담 7시간으로 구성된 사이버인권 연수과정을 10기에 걸쳐 개설하였다. 연수내용을 살펴보면, 인권에 대한 이해, 국제인권 규범과 아동인권,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이해와 적용, 학생참여 및 자치와 민주시민 교육, 소수학생의 인권(장애학생 인권), 소수학생의 인권(다문화, 저소득, 운동선수 인권), 인권구제 제도의 의미와 활용, 사례로 본 인권친화적 생활지도 방법, 학교 장면에서의 상담 실제, 학교 상담 기법과 기술, 대화법, 학부모 상담, 영역별 상담 사례(학교폭력), 영역별 상담 사례(성, 불안, 우울), 영역별 상담 사례(ADHD, 따돌림 및 대인관계)로 구성하였다.

이 연수를 통해 규정과 약속이 지켜지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생인권 의식 및 상담 능력을 신장하여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여 공교육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2) 학생

첫째, 2013년 학생인권실태조사를 위한 학생참여위원회의 의견 수렴 및 학생 의견 수렴을 토대로 한 학생인권 정책 수립, 학생인권이 존중되는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및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학생 대토론회를 2013. 10. 19.(토)에 추진하였다.

토론회의 기획 및 운영은 학생참여위원회의 위원이 별도 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경기도교육청 학교인권지원과,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옹호관 사무지원 담당자가 협력하여 토론회 기획단에서 협의된 사항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부에서는 학생참여위원회 소개 및 학생인권조례 전반에 대한 기초발제로 학생인권조례 전반에 대한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고 2부에서는 분임토론의 주제를 참가자가 선택하여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의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3부에서는 토론회 기획단 및 찬반 대표자가 2부 분임토론에서 개진된 의견을 정리하여 종합발표 및

학생인권 OX 퀴즈를 통해 학생인권의 이해를 도모하였다.

둘째, 2010년 10월 05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공포 및 학생인권의 날 선포와 함께 3년이 지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3회 학생인권 혁신의 달을 운영하였다. 이는 참여와 소통, 자율과 책임으로 인권이 생동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위해 학생인권 혁신의 달 지정 운영, 단위학교 특색에 맞는 인권관련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소통과 공감에 있는 학생이 주도하는 자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학생들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된 학교문화 조성 및 학생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이 기획하는 행사를 추진하고, 지역교육청에서는 지역학생대표협의회를 통해 학생 중심의 학생인권 혁신의 달 행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였으며 각급학교의 우수 실천 사례를 서로 공유하며 인권 감수성을 신장하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에 주력하였다. 그리고 함께 만들어 가는 학생인권 혁신의 달 행사를 위해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 등 교육 주체들의 상호이해와 화합의 장 마련을 노력하였다.

셋째, 2013 창의지성 핵심역량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교과 연계나 창의적 체험활동, 재량활동, 특별활동 시간에 학생인권교육시간을 확보하여 별도의 방과후 인권교육이 아니라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내재된 인권교육이 실현되도록 하고 있다.

인권과 관련하여 비폭력 평화교육 등 학생들이 타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고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해 당연히 가지는 권리나 자격을 이해하여 삶의 질을 고양시키도록 하고 있다.

3. 학생자치활동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자치권 보장을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이 주체가 되어 조직을 구성하고, 자신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학교의 교육활동과 학교주요 정책에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며, 생활 속에서 당면한 문제를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활동을 통해 미래사회에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단위학교 학생자치문화 기반 조성 실천, 둘째, 실천과 참여 중심의 학생자치활동 역량 강화, 셋째,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체제 구축을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여 자율과 책임, 참여와 소통이 있는 민주적인 학생자치문화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2013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한 학생자치활동관련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단위학교 학생자치문화 기반 조성 실천

- 학생자치활동 환경 조성
- 학생 중심의 특색 있는 자치활동 운영
- 학급회의 및 학생회의 실질적인 운영
-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 참여 보장
- 교육과정 연계 학생자치활동 실천
- 학생자치활동 전담부서 설치
- 단위학교 학생자치활동 예산 편성

② 실천과 참여 중심의 학생자치활동 역량강화

- 경기도 학생자치활동 역량 강화 캠프 운영
- 지역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역량 강화 캠프 운영
- 교과서 속 민주주의 현장체험 활동 지원
- 찾아가는 민주시민 교육연극 토론회 운영
- 학교내 학생 NGO 활동 지원
- 학생자치법정 모델학교 운영 지원

③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체제 구축

- 학생자치활동 지원단 구성
- 지역 학생자치협의회 조직 운영
- 학생자치활동 컨설팅 지원
- 학생자치활동 우수사례 발굴 보급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정책 홍보

1) 2013 권역별 학생자치활동 워크숍 운영

단위학교 교원의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소통 공감 나눔으로 교육주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며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우수 사례 공유로 교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학생자치활동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다.

25개 지역교육청을 5개 권역으로 편성하여 주관 지역교육청에서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발전과제를 위한 토론회 및 학생자치활동 매뉴얼 활용방안 연수를 실시하였다. 워크숍의 주제는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방안으로 학생회 및 학급회 운영 정상화, 교육과정 연계 학생자치활동 운영방법, 학생자치실 확보 및 활용방안, 학생 관련 주요정책 결정에 학생참여 보장,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사의 역할,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교육청은 무엇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가 등의 내용으로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학생자치활동 매뉴얼 활용방안 연수에서는 학생자치활동 매뉴얼 소개 및 학생자치활동 매뉴얼 활용 방안 안내를 하였다.

권역별 학생자치활동 워크숍은 교원의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학생자치활동 역량강화를 통한 운영의 질을 제고하며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담당교원의 비전공유로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2) 2013 학생자치법정 운영교 공모 운영

학생 중심의 스스로 규정과 약속을 준수하는 질서가 지켜지는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공동체 의견으로 바람직한 태도 변화와 건전하고 합리적인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학생들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사정과 반성 및 개선 노력을 말할 기회를 주어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자치법정은 교칙 위반 사항에 대해 학생들이 직접 판사, 검사, 변호인, 배심원 역할을 맡아서 재판을 실시하고, 교칙 위반자에게 교육적 처분을 실시하는 참여형 법 교육 프로그램으로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190교를 공모하여 별도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생자치법정은 학교의 다양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의 공간으로써 학생 자치법

정을 운영하고, 누적 벌점이 기준 점수 초과 시 학생자치법정을 개최하여 상벌점제도(그린마일리지)와 연계하여 운영하기도 하며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규칙 위반 학생들 대상으로 학교 규칙 준수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하며 단위학교별 규정과 연계를 통한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자치법정은 학교와 교사의 일방적이고 임의적인 학생 생활지도 방식이 갖는 한계와 인권 침해 소지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견으로 바람직한 태도 변화와 건전하고 합리적인 민주시민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규정과 약속을 준수하는 학생자치문화 활성화 및 자체적 문제해결을 통한 신뢰와 존중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하고 있다.

3) 학생자치활동 컨설팅 실시

창의적 체험활동 내 자치활동 운영 컨설팅을 통한 자치활동 활성화를 촉진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및 자치활동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점검결과에 대한 환류를 하고자 하였다. 컨설팅 내용으로는 자치활동 내 학급회의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내 자치활동 운영 단위학교별 자체평가를 지원하거나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창의적 체험활동 내 학급회의를 포함한 자율 활동 시간 운영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활동이 증가하여 학급회의 시수 편성 비율이 낮아짐에 따라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시수 확보가 필요하며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의 내실화 및 학생자치활동(학급회의)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하고자 하였다.

학생자치활동 컨설팅 방법은 학교별 자체 점검을 하거나 지역교육청별 학교방문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도교육청 단위 컨설팅 대상 중심교에 모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컨설팅으로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 지원하고자 하고 있다.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은 창의적 체험활동 내 자치활동(학급회의) 운영의 활성화를 가져오고 특히 창의적 체험활동 내실화로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민주 시민 육성에 크게 기여하고자 하고 있다.

4) 각 지역교육청별 학생자치활동 역량 강화 캠프 실시

학생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기능력의 배양으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지덕체가 조화로운 인성을 길러 자유롭고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영위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고자 학생자치활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학생자치활동은 학생회가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학생인권 자치활동으로 소통과 협력의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급별로 학생 대표를 선발하고 지원청별 협의회 회장을 두어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자치회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지역별 학생대표 협의회를 조직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자체 역량강화 캠프를 추진하고 학생 인권의 달 행사나 학생자치활동을 스스로 평가하여 우수 사례를 발표하여 공유하기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학생자치활동 역량 강화 캠프는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형성하고 민주적인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자치활동 능력을 함양하며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의 교류와 협력 증진 등 사랑과 나눔으로 화합하는 학교공동체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제2절 해외 제도 소개

1. 인권교육

1) 미국 LA 인권교육 실태

미국 LA에서의 인권교육을 인권보호학생 TF팀에서 조사한 「LA인권교육 실태 조사 보고서」(2011.08.)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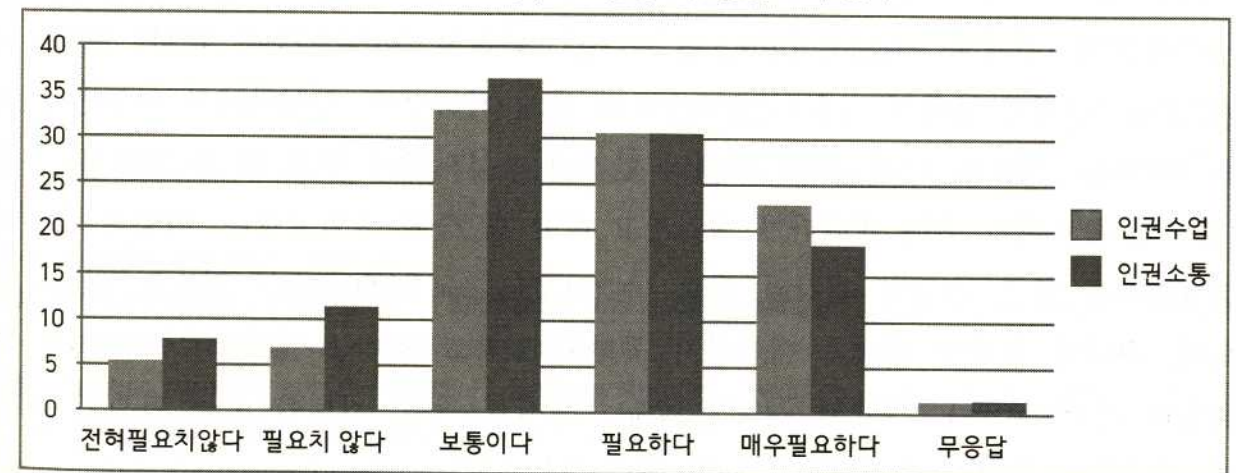
이 보고서는 2011년 3월에서 6월까지 수행한 인권연구로 미국 LA에 있는 사립과 공립의 10개의 고등학교에서 약 2,900명의 학생(9~12세)들을 대상으로 LA지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활동에서 인권에 대해 얼마나 다루고 성과를 내고 있는지

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인권교육을 도입할 때 보다 효과적인 시스템에 대해서도 연구하여 제시하고 있다.

조사방법으로는 2011년 6월 수업시간에 6개의 공립(2,381명), 4개의 사립(503명) 학교 학생(1학년 725명, 2학년 822명, 3학년 855명, 4학년 459명, 교사23명) 2,884명을 대상으로 5개의 선택형 질문과 2개의 주관식 질문으로 조사하여 학년별로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권이란 무엇인가에 31%가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으며, 인간존엄성에 대해 알고 있는 학생들이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에서 인권에 대해 배운 적이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서는 학생들의 73%(2,097명)가 수업에서 배웠다고 응답했으며 세계인권선언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설문에서는 71%(2,040명)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세계인권선언문을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한 응답에서는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72%(1,80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에 대해 배운 수업이나 과외활동은 역사(1,786명), 영문학(820명), 정부/시민사회(253명), 어학(208명), 예술(178명), 기타(203명)으로 대부분 역사나 영문학시간에 인권에 대해 배운 것으로 응답하였다. 인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인권에 대해 배우길 원하는 응답자가 받은 넘었으나, 수업에서 인권을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 미국 LA 인권교육 관련 조사 결과



- 인권수업: 수업에서 인권에 대해 더 배우길 원한다.
- 인권소통: 학교에서 인권에 대해 이야기 나눌 기회를 더 제공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학생들은 인권에 대해 더 배우고자 하지만, 전통적인 교육 방식 보다는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 대안적인 교육 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학생 동아리나 학생 자치회와 같은 것을 통해 인권을 배우고자 하고 있다. 인권교육은 역사, 영문학, 정부/시민 수업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수학, 예술, 어학과 같은 수업에서도 진행되고 있었으며 교과를 넘어 통합적 성격적인 수업에서 매우 효과적인 인권수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권, 특히 현대 인권 문제에 대한 대화에 학생들의 관심이 있으며 자기 주관적인 답변을 하면서, 학생들은 투표할 권리, 자기 의견을 말할 권리, 결혼과 종교에 대한 자유 등에 대해 친밀해지거나 흥미를 가지게 된다고 응답하고 있다.

<출처: www.hrwstf.org, HRW Student Task Force>

2) 캐나다의 인권교육 실태

2011년 세이프더칠드런 캐나다지국에서 여성(64.3%), 남성(35.7%), 만26~44세(31.1%), 65세 이상(21.1%), 도시민(64.9%)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1 캐나다 아동 권리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나타난 캐나다의 인권교육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권리에 대한 지식을 보면 77.6%가 UN 세계인권선언을 알고 있으면 57.4%가 UN 아동권리협약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권리 문제로 중요한 영역을 물어본 결과 '생존과 성장'(94.6%), '교육'(93.8%), '경제적 착취, 위험한 노동 환경'(93.3%), '높은 수준의 건강과 의료시설'(91.3%), '다른 나라의 아동권리에 대한 연대 의식'(87.2%), '참여와 표현의 자유'(67.2%)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아동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생존과 성장, 교육, 경제적 안정이 우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아동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캐나다가 책임지고 해야 할 중요 영역으로는 '아동의 생존과 성장'(69.6%), '높은 수준의 건강과 의료시설'(61.7%), '교육'(56.6%)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캐나다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이는 영역으로는 '캐나다내 아동권리 전반'(50.5%), '생존과 성장'(30.2%), '경제적 착취, 위험한 노동 환경'(25.0%), '높은 수준의 건강과 의료시설'(19.7%)로 나타났다.

2. 유네스코 협동학교의 '인권친화학교 모델'

유네스코 협동학교에서는 인권친화적 학교모델(Human rights friendly school)을 제시하고 있으며, 2012년 현재 참여국가는 베닌, 버뮤다, 칠레, 크트데부아, 체코, 덴마크, 가나, 헝가리, 인디아,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태리, 케냐, 몰도바, 몽고, 모로코, 파라과이, 폴란드, 세네갈, 남아프리카, 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그 내용과 사례로 덴마크의 인권친화적 학교모델을 소개한다.

1) 유네스코 협동학교의 인권친화학교 모델

○ 인권교육이란 무엇인가?

인권교육이란 자신들의 권리를 향유하여 훈련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정보, 태도, 가치, 기술 등을 함양시켜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참여형 훈련이다. 따라서 인권교육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에 대한 교육
 - 인권의 개념, 원리, 제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가치에 대한 이해와 정보
2. 인권을 통한 교육
 - 포용, 참여, 교육자와 교육대상자 모두의 권리를 존중하는 민주적 방법을 통한 교육
3. 인권을 위한 교육
 - 일상에서의 인권을 훈련하고 자신의 권리를 훈련하고 향유하며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 자료원: Becoming a Human Rights Friendly School, 2012, Anesty international

<원문>

Human rights education involves:

- Education **about** human rights -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norms, principles, instruments, and the values that underpin them.
- Education **through** human rights - learning through inclusive, participatory and democratic methods that respects the rights of both educators and learners.
- Education **for** human rights - teaching and learning that allows the practice of human rights in daily life and empowers persons to enjoy and exercise their rights and to respect and uphold the rights of others.

○ 인권친화학교란 무엇인가?

인권친화학교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의 문제의 결정에 참여하여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참여절차를 훈련하고 공동체의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을 키울 뿐만 아니라 책임의식을 가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권친화학교는 학교생활의 중요 부분에 인권을 통합하는 총체적이고 거시적인 접근을 사용한다. 이는 인권교육에 대한 권리에 기반한 접근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총체적 접근을 통하여 학교공동체는 무엇이 가르쳐지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의 인권문화의 형성을 위하여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에도 주목한다.

2) 덴마크 Kon Tiki Skolen 사례

덴마크의 힐로이드 Kon Tiki Skolen 학교에서는 매일 아침의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참여하는 조희로 인권친화 학교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이 학교 전체 커뮤니티는 최근 소식과 공지 사항에 대한 포럼을 제공하는데, 이는 학교 공동체의 특별한 필요에 부합하는 인권친화적 체계를 공고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어 중요한 장으로 기능한다.

학생들의 민주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 미팅은 그 단위를 번갈아 학생들에 의하여 조직된다. 매주 금요일에는 “민주적 절차(democratic process)”라는 특별한 세션이 열리는데, 여기서는 학생들이 견해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학교생활의 모든 면에 대한 교장과 교사의 피드백이 제공된다. 이 과정의 일부로 학년마다 선출된 두 명의 대표가 교사 및 교직원들과 그 주의 이슈에 대하여 협상하고 협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학생전체와 의사소통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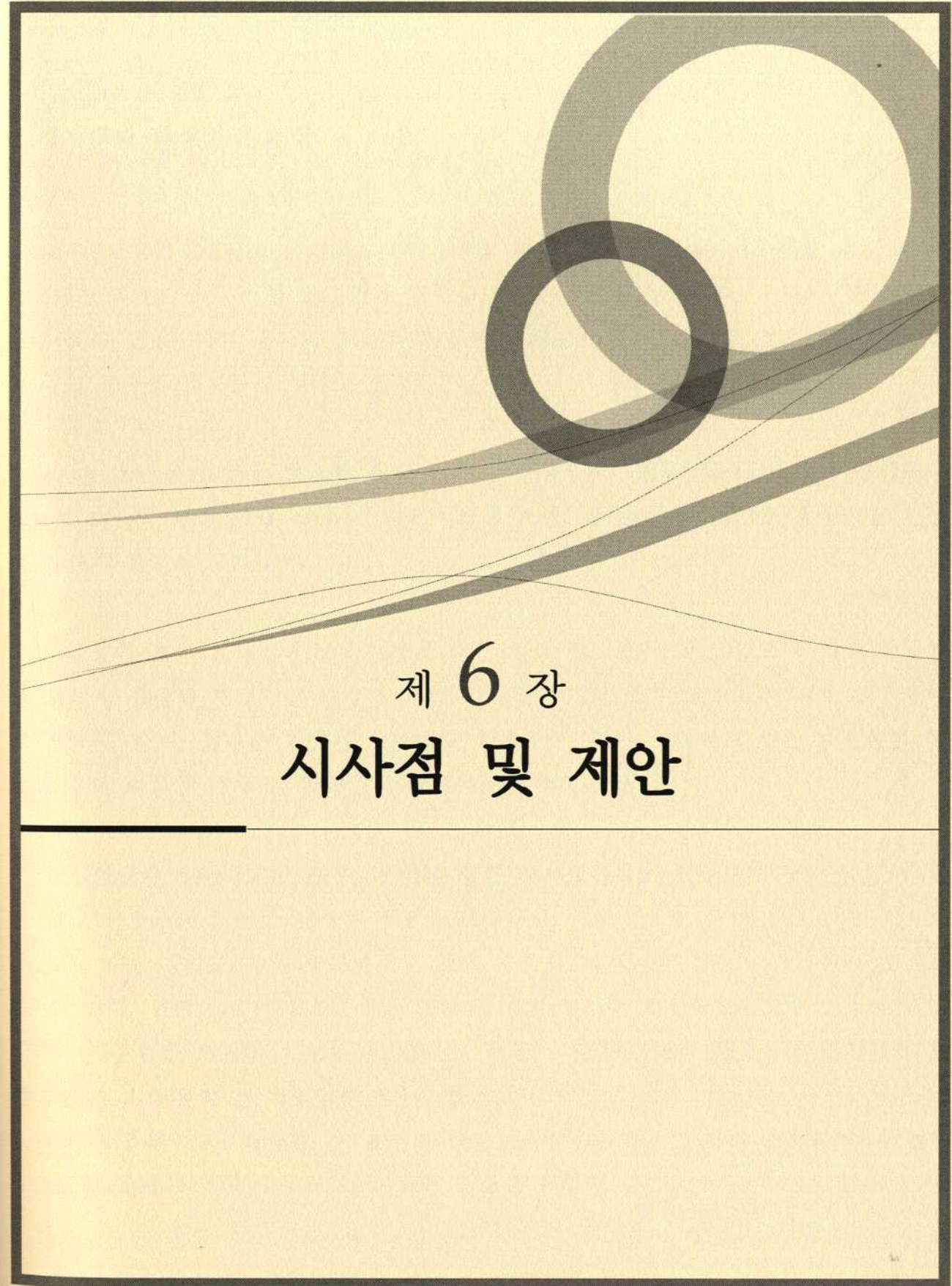
학교는 학생들이 펀드레이징 이벤트와 같이 협의의 과정을 통하여 주어진 돈을 관리하는 경험까지 할 수 있는 학교에서의 활동을 자신들이 직접 주도적으로 조직하고 진행하는 것을 권장함으로써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시킨다.

학부모의 학교 생활에의 참여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학부모 학교 참여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참석, 아침 조희 참여, 정원가꾸기 모임과 같은 특별활동을 조직하는 방법 등이 있다.

“세계적 이슈에 대한 대응과 민주적 참여를 지원하는 환경”

전반적으로 매일의 작업 속에서 견해와 대화를 통한 인권적 통합은 세계적 이슈에 대한 대응과 민주적 참여를 지원하는 환경이 정착화하도록 기능하여 왔다. 인권친화학교 프로젝트에 대한 학교보고서는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사들, 그리고 학생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진보적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학생들은 특히 이러한 민주적 과정을 통하여 학교에서의 결정에서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게 된다고 느낀다.

<출처: “Becoming a Human Rights Friendly School”, Amnesty International, Sep.2012>



제 6 장
시사점 및 제안

제 6 장 시사점 및 제안

1. 경기도내 학생인권 신장

- 이번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 시행 3년을 맞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 내 학교에서 학생인권의 신장에 견인차 역할을 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초기에 설정한 학교내 폭력 근절, 체벌 금지와 기본적 자유권의 확보에 있어 경기도 전체 학교들에 걸쳐 일정 수준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 특히, 2013년 10월에 발표된 학교+너머 운동본부의 「전국 학생인권생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의 전국 학생 대상 결과와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경기도 학생인권 신장의 성과가 확연히 드러난다.
- 학생들의 경우 학생인권조례 자체에 대한 인식 정도는 높지 않았으나 이와 상관없이 조례에 규정된 학생인권 내용에 대한 감수성이 있었으며, 교사들의 경우 자신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음에도 학생인권조례가 보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의 경우, 온라인 설문 통계상으로는 인권보장 수준에 있어 혁신 학교가 소폭의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나, 전체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기도 전체 학교에서의 일정 수준의 학생인권 신장이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집단면접조사에서 파악된 바에 의하면 혁신학교제도가 안정되게 정착된 경우, 일반 학교의 학생인권보장의 수준과는 온라인 조사 항목에서 발견하기 힘들었던 질적 차원의 큰 차별성을 볼 수 있었다.
- 특히 학생과 교사, 학생들 간, 교사와 학부모, 학생과 학부모 간의 소통의 양과 질의 면에서 일반 학교의 경우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였다.
- 학부모들의 경우 학업성취도와 상관없이 자신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행복한가에 큰

비중을 두고 있었으며, 학교생활은 가정에서의 학생과 학부모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다만 혁신학교의 경우 역시 그 출발이 보여주듯이 교사들의 헌신에 의하여 그 토대가 구축되고 유지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교사들의 동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뒷받침(상담교사 및 보조교사 배치, 행정업무 경감, 전담 학생 수의 적절화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판단된다.

2. 학생인권의 질적 향상 및 지속가능성 확보 > 학생인권 2기

○ 인권교육의 선진인 경기도교육청은 이제 학생인권의 질적 신장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2기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내용으로서의 인권 > 방식으로서의 인권”

○ 학생인권의 주체로 학교행정, 교사, 학생이 소통과 합의의 문화를 형성하게 한다. 예를 들어, 두발 길이 단속이나 휴대폰 소지 등 단순한 지침형 기준에서, 이에 대한 학교공동체의 합의 도출을 통해 교육과 평화적 학교 문화와 개성 실현 권리의 보장이 양립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인권이 정립되어야 한다.

“인권 주체로서의 교사, 학교행정에 대한 지원”

- 학생인권 증진이라는 목표에서 경기도교육청 전체의 인권증진이라는 축을 놓친 면이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서도 교사와 학교행정의 인권과 참여가 학생인권의 중요한 축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즉 학생인권의 1차적 책무자로서의 학교행정과 교사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도, 이들을 자신의 인권 증진과 함께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의 주체로 초대하여야만 한다.

○ 한편 이번 연구를 통하여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지속적인 안착화를 위하여 이제 무엇보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호흡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다방면에서의 지원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 이는 온라인 설문 통계상 교사들의 직무피로도나 학교에서의 업무환경 등과 학생인권과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뿐만 아니라, 집단면접조사 면담에서도 나타난 결과이다. 집단면접 조사에서 파악된 바에 의하면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밀착도에 따라서 그 학교의 인권 문화 정착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확연히 목격할 수 있었다.

- 설문결과 수치상 교사의 직무피로도나 조례의 학생인권보장성 인식 및 여러 학생인권지표와 역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한편 학교장의 교사 의견 경청도, 교사에 대한 학생인권 증진 주체성 인정 등의 문제는 교사의 직무피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학생인권 증진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사를 학생인권의 한 주체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 집단면접조사 결과 교사들은 수업 외 과도한 행정업무로 인한 피로도가 매우 높았으며, 적절한 전담 학생 수의 조정과 전문적인 상담교사의 배치 등 실질적인 학생지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에 대한 요청이 많았다. 결국 교사의 인권상황이 학생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학교 현장에서의 교사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어 교사들의 학교에서의 업무환경과 교사의 직무피로도를 개선, 학생인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기도 학교행정과 교사 인권 역량 강화”

○ 학교인권의 주체로서의 학교 행정, 교사, 학생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교사들의 역량 증진을 통한 학교 공동체의 인권거버넌스 안착화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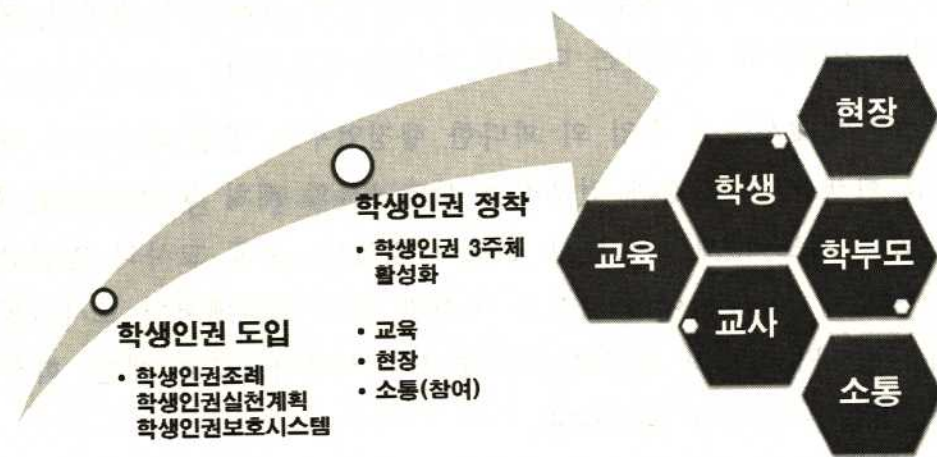
- 1) 학교 행정, 교사를 포함한 집중 인권 실태/수요 조사
- 2) 교사 1인당 학생 수 조절, 행정업무 경감, 교사들 자신들의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활성화 및 멘토링 제도 등 다방면에서의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

3) 교사들의 인권역량 증진을 위한 보수교육체계 프로그램 마련과 운영

4) 민주적 학교운영

- 소통체계 마련, 강화 : 교사의 학교운영 참여제도 확충
- 교장의 인식전환 : 교장은 평교사에 대한 assistant

○ 권한과 책임은 비례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책무자인 교장과 교사의 역량 강화가 결정적인 요인임을 인식하여야 함을 강조하며, 이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청은 2014년 주요 사업으로 교사와 교장의 인권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그림 VI-1> 학생 인권의 확산 과정

3. 통합적 교육 시스템으로서의 인권교육

○ 경기도교육청 교육의 중요한 축인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인권교육'이 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기 분리되어 진행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원과 시간의 한계에 따라 각기 얇은 수준의 교육으로 진행되는 아쉬움이 있었다. 예를 들면, 민주시민교육 교재의 내용의 2/3정도가 인권을 다루고 있으며, 일부는 평화를 다루고 있다. 또한 모의 법정이라는 사법형 체험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시행 단계에 있는 반면, 학생들에게 절

실한 회의방법이나 모의 국회, 나아가 학교행정의 참여 등은 배제되고 있다.

○ 이들 교육은 실제 내용과 진행방법에 있어 서로 분리되지 않는 교육이므로 이들 교육의 통합적 접근과 구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보다 교육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들의 민주적 시민의식의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본다.

-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의 행정 체계의 조정과 통합적 교육을 위한 시스템 마련(교육 커리큘럼 구성, 교사 연수 등)이 필요하다.

○ 학생자치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그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하여 먼저 학생들이 진정한 의미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고민을 통하여 그 필요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인권교육이 마련,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의 대부분이 형식적이라는 점에서 그 효과에 대한 점검과 그 대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 이와 관련하여 경기교육청에서는 관련한 전문가 그룹의 고민을 토대로 학생인권교육 콘텐츠와 학생인권교육을 진행할 전문 강사단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 언급한 바와 같이 학생자치와 인권교육의 문제는 동일체 수준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민주시민교육과 평화 교육, 그리고 인권교육을 통합하는 통합적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 참고할 만한 예로서, UN과 국제엠네스티가 진행하고 있는 인권친화학교 네트워크가 있다. 여기에서는 교육의 중요한 과제로서의 「인권교육」을 상정하고 있으며, 「인권」 내용에 대한, 「인권」방식을 통한, 「인권」증진을 목표로 하는 교육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통합 교육 모델 > 평화인권학교”

○ (사)인권정책연구소에서는, 이러한 통합적 인권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모델학교를

구성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는 경기도 학생인권의 통합적이고 질적 성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이 유네스코 협력학교의 일원이 되는 모습을 가시화시키게 된다. 또한, 이러한 모델학교가 인권친화학교 네트워크의 일원이 됨으로써, 인권교육의 국제적 파트너가 된다.

제안 : 통합 교육 모델로서의 평화인권학교

평화인권학교의 개념 : 「인권, 「평화, 「민주시민」에 대한 통합적 교육 시스템이며, 교육의 목적과 내용뿐만 아니라, 교육적 수단으로서도 이러한 세 핵심 가치가 실현되는 교육이다.

하나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실현체로서의 지향점이기도 하다. 즉 학교 내의 전반적인 운영방식, 교과내용, 문화 등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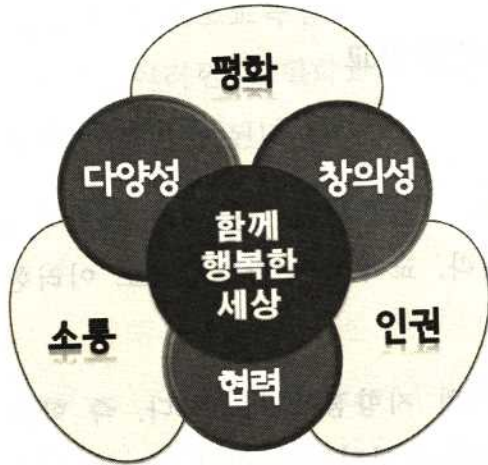


<그림 VI-2> 평화인권교육의 개념

평화인권학교의 목표 : 경기도교육청의 기본방향인 「창의적인 민주시민 양성」의 구체적인 실현체로서의 하나의 대안을 제공하는 것.

이러한 틀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세대들에게 「다양성, 「창의성, 「협력」이라는 교육적 핵심 요소(가치)를 키워내는 것이다.

이러한 핵심요소는 평화인권학교의 구성 요소인 「평화, 「인권존중, 「소통을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만들어지며,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 ✓ 미래 사회 구성원에게 필요한 가치 : 협력, 다양성, 창의성
- ✓ 필요 요소를 성장시키는 배경 요소
 - 평화 : 비폭력, 공존
 - 인권 : 자기 성장, 수용
 - 소통 : 관계, 자존감

<그림 VI-3> 평화인권교육의 목표

평화인권학교의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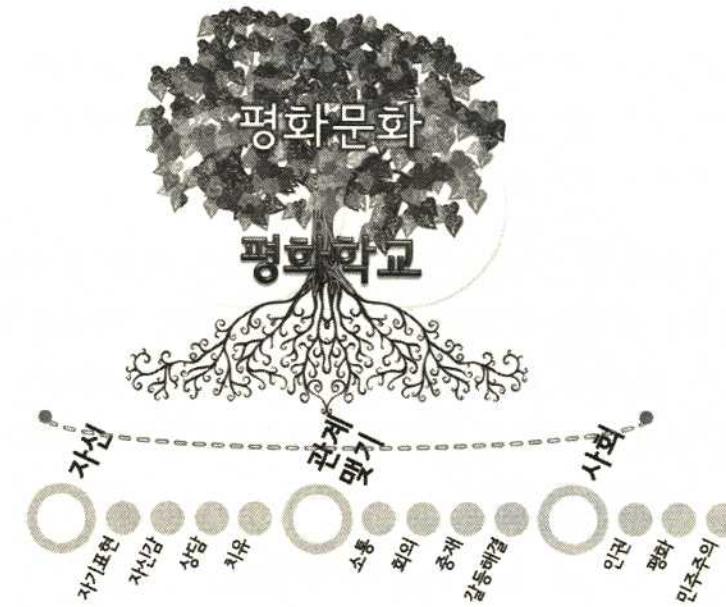
전략 : 학교 구성원의 합의와 참여 우선(자력화, 교육, 소통)

- 학교 운영 시스템 및 소통 문화 우선
- 역량 성장 및 자원 준비에 따른 단계적 전개
- 각 활동의 모듈화와 성공사례의 보급

주요 내용 : (참고: 평화인권학교 프로그램 구성 예)

- 학교 구성원의 소통 : 평화 회의방법
- 학교 인권 모니터링 : 인권온도계(상시), 학교인권친화도(정기) 등 일상에 내재된 소외/폭력 예방 시스템 :
 - 상담 기능 강화, 교내 쉼터(Shelter), 또래 상담 등
- 통합적 접근 : 교사대상 평화인권교육방법 공유(교육, 시범 교과 통합화, 사례 공유 등)
- 학교 운영 방식에서의 참여(참여민주주의 방법 채택)

- 참고 자료 :** 공감교실 프로그램 : 비폭력대화(NVC)
 인권친화학교 : 국제 엠네스티, 유네스코 등
 민주시민교육방법론 : 독일 EZF 재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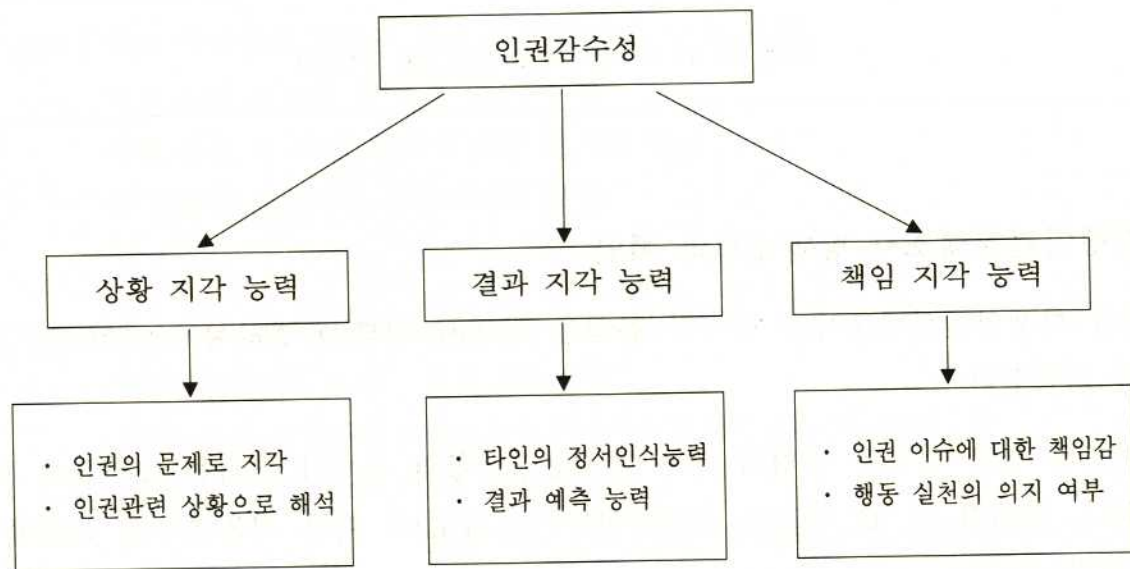
<그림 VI-4> 평화인권학교 프로그램 구성(예)

4. 학생인권실태조사 방법에서의 제안

- o 이번 학생인권실태조사와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연구진 및 전문가 제안을 기록한다.
- 중학교의 경우 사립과 공립의 경우 학생인권상황의 차이가 크다는 교사들의 의견이 있었다. 이처럼 각 급 학교의 운영주체(사립, 공립)에 따른 설문결과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 실태조사에서 학교 내 구성원들의 숫자를 조사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학생당 학교 내 인적자원의 분포와 이에 따른 학생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볼 필요가 있어 총 교사 수, 총 교직원수(교사외), 총 학생수를 하나의 항목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 집단면접조사에서 설문결과의 수치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많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학교마다 그 특색에 따라 다양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집단면접조사에 대해 대상자의 수와 다양성, 그리고 면접 시간 및 준비 등에 있어 보다 풍부하게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학부모 샘플링에서의 편향성을 줄이기 위해 일본의 사와사키시의 아동권리실태조사 사례처럼 우편을 통한 조사 방법을 채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이번 실태조사에서 교사들의 직무피로도가 학생인권의 여러 요소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보다 심층적 조사와 학술적 조사를 병행하기 위해 MBI-ES 전체를 활용한 조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 설문 중 인권감수성을 가늠할 수 있는 설문을 설정하여 여타 변수들과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감수성 지표개발」을 참조하면 좋을 것이다. 아래의 표와 같이 단계적으로 인권감수성이 구성되므로, 각 단계별 인권감수성을 파악하여 이를 통한 학생인권요소와의 관계성을 구성해 볼 필요가 있다.

<표 VI-1> 인권감수성 구성요소



(출처: 인권감수성 지표개발 (2002), 국가인권위원회)

부록 I

학생인권 전국대비

부록 I. 학생인권 전국대비

※ 2013년 10월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와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에서 공동연구 발표한 「2013 전국 학생인권생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와 본 「2013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와 유사한 항목에 대한 비교를 정리함.

-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전국의 설문 결과와 경기도 설문 결과에 각각 평점으로 환산한 수치를 제시하고 그 편차를 적시하였다.
- 설문에 따라 답변항목의 차이가 있어 어느 정도의 오차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그러한 오차를 감안한다고 해도 모든 분야에서 경기도가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5% 정도까지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이러한 분석에 근거할 때 경기도 내 학교에서의 학생인권의 수준은 전국 대비 상당 수준으로 앞서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 체벌

지역 학교별	경기도			평점차	전국				
	있다	없다	평점		평점	자주있다	가끔있다	별로없다	전혀없다
전체	19.2%	80.8%	80.8	26.4	54.4	6.2%	17.0%	29.8%	47.0%
초등학교	13.1%	86.9%	86.9	20.5	66.4	1.0%	7.6%	15.9%	75.4%
중학교	28.3%	71.7%	71.7	14.6	57.1	4.3%	14.3%	30.2%	51.2%
인문계고	15.3%	84.7%	84.7	32.0	52.7	5.5%	19.3%	33.7%	41.4%
특성화고	17.7%	82.3%	82.3	49.9	32.5	12.5%	20.5%	1.6%	35.4%
특목고	13.3%	86.7%	86.7	43.8	42.9	14.3%	33.8%	18.2%	33.8%

2. 교사의 언어폭력

지역	경기도			평점차	전국				
	있다	없다	평점		평점	자주있다	가끔있다	별로없다	전혀없다
전체	22.8%	77.2%	77.2	25.9	51.3	8.2%	20.6%	28.9%	42.3%

3. 두발 길이 규제

지역	경기도						평점차	전국				
	매우그렇다	조그다	금형	보통이다	별로아니다	전혀아니다		평점	매우그렇다	조그다	금형	별로아니다
전체	5.0%	7.4%	19.5%	23.9%	44.2%	73.7	31.1	42.6	27.4%	16.0%	15.5%	41.1%

4. 차별

지역	경기도(성적 + 경제수준)							평점차	전국(성적)				
	매우그렇다	조그다	금형	보통이다	별로아니다	전혀아니다	평점		평점	자주있다	가끔있다	별로없다	전혀없다
초등학교	3.4%	4.4%	9.3%	22.6%	60.2%	83.0	27.3	55.7	2.1%	20.0%	31.0%	46.9%	
중학교	4.1%	8.9%	20.3%	31.9%	34.7%	71.1	25.3	45.8	9.1%	25.7%	38.5%	26.8%	
인문계고	3.7%	11.4%	23.7%	37.4%	23.7%	66.5	33.5	33.0	18.6%	43.5%	25.4%	12.5%	
특성화고	5.1%	10.4%	20.3%	34.0%	30.2%	68.4	31.6	36.8	15.5%	39.5%	27.5%	17.6%	
특목고	8.2%	12.2%	20.4%	37.8%	21.4%	63.0	28.9	34.1	15.6%	45.5%	26.0%	13.0%	
								전국(경제수준)					
								39.4	43.6	13.6%	27.0%	30.8%	28.6%

5. 학생 자치

지역	경기도						평점차	전국(성적)				
	매우그렇다	조그다	금형	보통이다	별로아니다	전혀아니다		평점	자주있다	가끔있다	별로없다	전혀없다
전체	14.7%	30.1%	42.4%	7.6%	5.2%	60.4	10.7	49.7	12.8%	16.7%	29.3%	41.1%
초등학교	24.3%	30.5%	35.4%	5.3%	4.5%	66.2	10.5	55.7	2.1%	20.0%	31.0%	46.9%
중학교	12.7%	29.3%	46.1%	7.2%	4.6%	59.5	13.8	45.8	9.1%	25.7%	38.5%	26.8%
인문계고	6.9%	31.7%	45.1%	9.9%	6.4%	55.7	22.8	33.0	18.6%	43.5%	25.4%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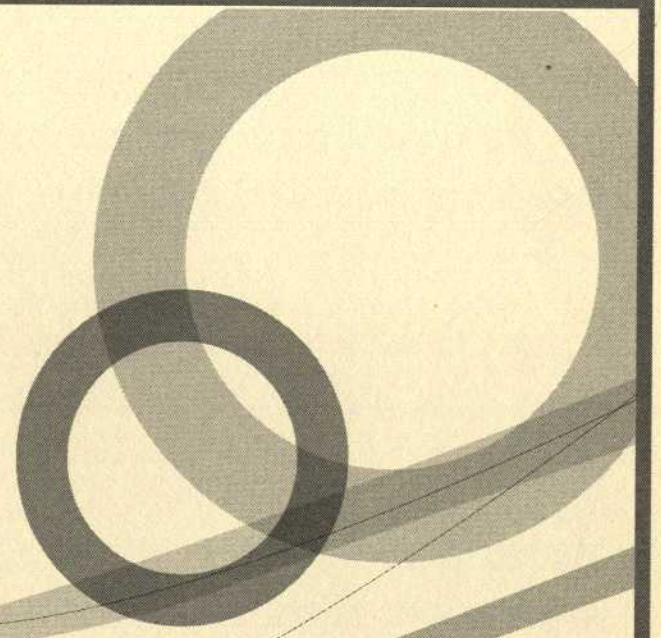
특성화고	12.7%	23.1%	47.8%	9.6%	6.8%	56.3	19.5	36.8	15.5%	39.5%	27.5%	17.6%
특목고	18.4%	41.8%	22.4%	14.3%	3.1%	64.5	30.4	34.1	15.6%	45.5%	26.0%	13.0%

6.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등

지역	경기도						평점차	전국(일괄)				
	매우그렇다	조그다	금형	보통이다	별로아니다	전혀아니다		평점	자주있다	가끔있다	별로없다	전혀없다
전체	4.1%	7.0%	17.5%	29.7%	41.8%	74.5	16.0	58.5	7.8%	10.6%	21.3%	60.3%
초등학교	2.8%	5.3%	12.5%	22.2%	57.2%	81.4	12.3	69.1	1.0%	2.4%	16.0%	80.6%
중학교	4.8%	8.8%	22.2%	31.3%	32.9%	69.7	6.6	63.1	3.3%	7.7%	22.7%	66.4%
인문계고	3.3%	5.8%	16.3%	35.8%	38.8%	75.2	14.4	60.8	4.7%	10.2%	22.2%	62.9%
특성화고	8.7%	10.4%	23.1%	31.9%	25.9%	64.0	22.3	41.7	25.1%	19.1%	19.5%	36.2%
특목고	11.2%	4.1%	7.1%	22.4%	55.1%	76.5	22.5	54.1	8.0%	18.7%	22.7%	50.7%

7. 인권교육경험

지역	경기도			평점차	전국(성적)		
	있다	없다	평점		평점	있다	없다
전체	77.2%	22.8%	77.2	34.6	42.7	42.7%	57.3%
초등학교	89.6%	10.4%	89.6	32.2	57.4	57.4%	42.6%
중학교	80.0%	20.0%	80.0	19.2	60.8	60.8%	39.2%
인문계고	62.7%	37.3%	62.7	34.0	28.7	28.7%	71.3%
특성화고	68.5%	31.5%	68.5	39.3	29.2	29.2%	70.8%
특목고	59.2%	40.8%	59.2	20.7	38.5	38.5%	61.5%



부록 II

학생인권 건의사항 요약정리

부록Ⅱ. 학생인권 건의사항 요약정리

2013년 온라인 설문조사중 「학생인권에 대해 느낀 점이나 건의할 점을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라는 서술형 질문에 대해, 많은 수의 교사 및 학부모들이 답변을 주셨다.

약 500여명의 교사(참여자의 15% 정도)와 200여명의 학부모(참여자의 8% 정도)가 참여하였다. 이러한 높은 참여율은 교사와 학부모의 학생인권(혹은 학교 전반)에 대한 관심과 절박함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답변을 연구소의 벽을 활용하여, 브레인맵핑 방식으로 주제별로 정리해보았다. 이를 키워드별로 구분하였으며, 색을 활용하여 교사(흰색), 학부모(분홍색)를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이를 키워드별로 간략히 정리해본다.

1.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의 관계

-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이 반비례관계로 생각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제 생각은 학생인권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관리하기 힘들지 않는 한에서 시행되면 좋겠습니다. 너무 교권이 떨어진 것이 현실입니다.
- 학생인권보호로 인해 선생님 권위 훼손이나 학생의 방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다수 교사와 일부 학부모가 학생 인권의 보장으로 인해 교사의 인권 혹은 권위는 침해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의 인권과 더불어 교사 인권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

2.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의견

- 학생과 교사가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인권조례 이후 사라진 것 같습니다.
- 모든 것이 생소하여 답하는데 어려움 느낌.
- 학교 현장에 와보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 학생인권조례가 아닌가 생각한다.

☞ 1번과 같은 맥락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인권만을 강조해 교사의 인권 증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생과 교사가 배제된 채 교육청 주도로 제정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아직까지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옹호관 등 인권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3. 학교 폭력

- 학생인권 보호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또는 문제학생의 인권보호에만 치우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후략)
- 폭력에 대한 프로그램과 상담실, 상담선생님 인력 보충이 필요하며 해당 학생들은 엄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학생 인권에 대한 관심이 학교 폭력에 있어, 가해 학생의 인권 보호에 치중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밖에 학교 폭력 예방 교육과 학교 폭력에 대한 상담 등 학교 폭력 관련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 체벌

- 체벌하지 않는 것이 반드시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의 개인의 인권도 중요하므로 학생들의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나 버릇없는 학생들에게는 작은 벌도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효율적인 학생 지도와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위해서 적절한 선에서 체벌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교사와 학부모 양측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주체의 노력

- 학생과 교사 모두 인권에 대한 개념과 감수성이 떨어지므로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이 각 학교마다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선생님 개인사나 또는 업무량이 많아 여유가 없어서인지 학생태도를 배려하는 선생님 모습을 볼 수 없어 아쉬웠습니다.

☞ 학생 인권의 보장을 위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 각각의 노력을 강조하는 의견과 모든 주체가 동시에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다양하게 공존했다. 특히 교사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학생인권 보장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6. 기타의견

- 교장, 교감선생님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학생과 교사의 인권은 존중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 변화는 움직임이니까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 문화, 지지와 격려를 위한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대학 입시제도에 대한 성찰없이 안 된다.
-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및 예산 편성요망
- 학급당 학생수가 40명으로 너무 많습니다.

☞ 교사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학교장을 비롯한 관리자의 인권감수성 향상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와 더불어 현재의 대학입시제도 아래에서는 인권친화적 문화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밖에 학생 인권 증진을 위한 기타 의견으로는, 학생자치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 및 학급당 학생 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부록 Ⅲ. 온라인 설문지

2013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 (초·중·고등학생용)

안녕하세요.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이하 '조례') 시행 후 학생인권의 실태를 알아보고 학생인권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여러분과 후배들이 다니게 되는 경기도 내 학교의 인권문화를 성장시켜 「다니고 싶은 학교,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본 조사지의 질문은 정답이 없으므로, 평소 생각대로 편하게 응답하시면 됩니다. 또한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처리로만 사용되며, 학교나 개인의 평가 등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응답해주시면 본 조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문항을 빠짐없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경기도교육청

1) 다음은 학생인권조례와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해 묻습니다.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1) 학생인권조례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1-4) 학교생활인권규정에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다음은 여러분의 학교생활에 대해 묻습니다.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2-1) 학교나 선생님은 성적이나 가정형편 등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학교는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학교는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을 실시할 경우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는 응답하지 마십시오.)	①	②	③	④	⑤
2-4) 학교는 두발길이를 규제한다. (* 초등학생은 응답하지 마십시오)	①	②	③	④	⑤
2-5) 학생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 또는 학급 전체의 소지품 검사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학교는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등교하지 못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2-7) 학교는 신문 등 학생 언론활동과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8) 학교에 상담실과 상담 교사가 있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9)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0) 우리 학교 급식은 위생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2-11) 우리 학교는 급식 개선에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2-12) 우리 학교는 아플 때 보건실을 이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3) 학교나 선생님이 소수 학생(장애, 다문화, 빈곤, 한부모, 조부모 운동선수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4) 학생인권침해를 받았을 경우 학생인권옹호관과 상담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다음은 학교 폭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3-1) 최근 1년간 다른 학생(선후배 포함)에게 맞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2) 최근 1년간 다른 학생(선후배 포함)에게 언어폭력(심한 욕설, 비하적 표현 등)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3) 최근 1년간 학교나 학급에서 학생(선후배 포함)간 폭력을 본 경우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다음은 학생 자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4-1) 학교와 선생님은 학생회나 동아리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2) 학생회 공간이 별도로 있다.	①	②	③	④	⑤
4-3) 학생회가 정기적으로 열린다.	①	②	③	④	⑤
4-4) 학급대표나 학생대표로 출마할 경우 자격 제한 조건(성적, 출석 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5) 학교는 학생에게 영향을 주는 학교정책에 대해 학생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6) 학교는 학생회가 주관하고 기획하는 행사(운동회, 축제, 수학여행 등)를 실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다음은 징계 등의 절차에 대하여 묻습니다.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1) 별점이나 징계를 받을 경우, 학교나 선생님은 그 이유를 설명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5-2) 징계 절차에서 학생의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다음은 체벌에 대해 묻습니다.

6-1) 우리 학교는 체벌이 있습니까?

- ① 있다(6-1-1번에도 답변) ② 없다(6-2번으로 이동)

6-1-1) 있다면, 체벌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중복 답변 가능)

- ① 회초리 ② 신체 이용(손, 발) ③ 벌(팔굽혀펴기, 운동장 뛰기) ④ 단체 기합

6-2) 우리학교 선생님이 언어폭력(심한 욕설, 비하적 표현 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① 있다(6-2-1번에도 답변) ② 없다(7-1번으로 이동)

6-2-1) 있다면, 얼마나 자주 한다고 생각합니까?

- ① 가끔 한다(월 1회) ② 자주 한다(주 1회) ③ 매일 한다

7) 다음은 학교 밖 생활에 대해 묻습니다.

7-1) 학원에서 강사가 때리거나 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① 있다(7-1-1번에도 답변) ② 없다(7-2번으로 이동) ③ 학원에 다니지 않는다(7-2번으로 이동)

7-1-1) 있다면, 얼마나 자주 한다고 생각합니까?

- ① 가끔 한다(월 1회) ② 자주 한다(주 1회) ③ 매일 한다

7-2) 부모님(혹은 다른 보호자)이 때리거나 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① 있다(7-2-1번에도 답변) ② 없다(8-1번으로 이동)

7-2-1) 있다면, 얼마나 자주 한다고 생각합니까?

- ① 가끔 한다(월 1회) ② 자주 한다(주 1회) ③ 매일 한다

8) 다음은 인권교육에 대하여 묻습니다.

8-1) 우리 학교는 인권교육을 학기마다 실시한다.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8-2) 우리 학교에서는 인권교육을 어떤 형식으로 실시합니까?(3개까지 선택가능)

- ① 외부강사 강의 ② 가정통신문 전달
③ 수업시간 ④ 재량활동 시간에 인권 관련 내용으로 수업
⑤ 사이버(동영상, 인터넷 활용) 교육

8-3) 우리 학교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이 학생인권 신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9) 다음은 여러분에 대해 묻습니다.

9-1) 여러분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여자 ② 남자

9-2)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인문계고 ④ 특성화고 ⑤ 특수목적고

9-3)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는 혁신학교입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9-4)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의 지역은?

- ① 도시 ② 농어촌

9-5) 여러분과 같은 학년의 반은 총 몇 반까지 있습니까?

- ① 1반 ② 2반 ~ 3반 ③ 4 ~ 5반 ④ 6반 이상

9-6)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할아버지 ④ 할머니 ⑤ 기타

9-7) 하루 평균 가족과 함께 산책, 식사, 대화, 놀이 등을 하며 보내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TV 시청은 제외)

- ① 거의 없다 ② 30분 미만

- ③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④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⑤ 2시간 이상

9-8) 여러분이 해당되는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중복 답변 가능)

- ① 운동선수 ② 한부모가정 ③ 다문화가정
④ 장애인 ⑤ 해당사항 없음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3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 (교사용)

안녕하세요.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이하 '조례') 시행 후 학생인권의 실태를 알아보고 학생인권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서 설문 조사를 실시합니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경기도 내 학교의 인권문화를 성장시켜 『다니고 싶은 학교,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본 조사지의 질문은 정답이 없으므로, 평소 생각대로 편하게 응답하시면 됩니다. 또한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처리로만 사용되며, 학교나 개인의 평가 등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응답해주시면 본 조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문항을 빠짐없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경기도교육청

1) 다음은 학생인권조례와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1) 학생인권조례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1-4) 학교생활인권규정에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다음은 선생님이 소속한 학교에서의 학생 인권보호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2-1) 학교가 성적이나 가정형편 등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학교는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학교는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을 실시할 경우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는 응답하지 마십시오)	①	②	③	④	⑤
2-4) 학교는 두발길이를 규제한다. (*초등학교 선생님은 응답하지 마십시오)	①	②	③	④	⑤
2-5) 학생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 또는 학급 전체의 소지품 검사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학교는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등교하지 못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2-7) 학교는 신문 등 학생 언론활동과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8) 학교에 상담실과 상담 교사가 있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9)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0) 학교 급식은 위생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2-11) 학교는 급식 개선에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2) 학교에서 학생이 아플 때 보건실을 이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3) 학교장이 교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14) 교사가 학생인권 증진의 한 주체로서 존중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2-15) 학교는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문화 프로그램(공연, 전시, 문화교육)을 개최하고 참여를 권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2-16) 학교가 소수 학생(장애, 다문화, 빈곤, 한부모, 조부모, 운동선수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다음은 학교 폭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3-1) 최근 1년간 학교에서 학생간(선후배 포함) 신체적 폭력이 일어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2) 최근 1년간 학교에서 학생간(선후배 포함) 언어폭력(심한 욕설, 비방 등)이나 따돌림이 일어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3) 최근 1년간 학교에서 기합 등 학생간(선후배 포함) 폭력이 일어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다음은 학생 자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4-1) 학교는 학생회나 동아리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2) 학생회 공간이 별도로 있다.	①	②	③	④	⑤
4-3) 학생회가 정기적으로 열린다.	①	②	③	④	⑤
4-4) 학급대표나 학생대표로 출마할 경우 자격 제한 조건(성적, 출석 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5) 학교는 학생에게 영향을 주는 학교정책에 대해 학생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6) 학교는 학생회가 주관하고 기획하는 행사(운동회, 축제, 수학여행 등)를 실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다음은 징계 등의 절차에 대하여 묻습니다.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1) 학교는 벌점이나 징계시 학생에게 그 이유를 설명한다.	①	②	③	④	⑤
5-2) 학교는 징계 절차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다음은 체벌에 대해 묻습니다.

6-1) 선생님의 학교는 체벌이 있습니까?(중복 답변 가능)

- ① 있다(6-1-1번에도 답변) ② 없다(6-2번으로 이동)

6-1-1) 있다면, 체벌의 형태는 무엇입니까?(중복 답변 가능)

- ① 회초리 ② 신체 이용(손, 발) ③ 벌(팔굽혀펴기, 운동장 뛰기) ④ 단체 기합

6-2) 동료 선생님이 언어폭력(심한 욕설, 비하적 표현 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① 있다(6-2-1번에도 답변) ② 없다(7-1번으로 이동)

6-2-1) 있다면, 얼마나 자주 한다고 생각합니까?

- ① 가끔 한다(월 1회) ② 자주 한다(주 1회) ③ 매일 한다

7) 다음은 인권교육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7-1) 우리 학교는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을 학기마다 실시한다.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7-2) 우리 학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인권 관련 교육이나 간담회를 실시한다.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7-3) 우리 학교는 학생인권 관련 교사 연수를 실시한다.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7-4) 학교에서 학생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은 어떠한 형식으로 실시합니까?(3개까지 선택가능)

- ① 외부강사 강의 ② 가정통신문 발송

- ③ 수업시간 ④ 재량활동 시간에 인권 관련 내용으로 수업
⑤ 사이버(동영상, 인터넷 활용) 교육

7-5) 학교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이 인권의식 신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8) 학교 운영에 교사들의 참여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9) 학생인권옹호관제도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 ① 들은 바 없다 ② 들은 바는 있으나 잘 알지 못한다
③ 잘 안다 ④ 잘 알고 있으며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10) MBI 직무피로도 관련 질문입니다.

(※ 이 사항은 교사의 직무피로도와 학교현장의 인권실태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10-1) 학생에 관련된 사항은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0-2) 교사라는 직업을 통해 가치있는 일을 성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0-3) 아침에 일어나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0-4) 하루 일과를 마칠 때면 지쳐 있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0-5) 주변 사람들에게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1) 다음은 선생님에 관해 묻습니다.

11-1) 선생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여자 ② 남자

1) 다음은 학생인권조례와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1) 학생인권조례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1-4) 학교생활인권규정에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다음은 귀하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의 학생 인권보호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2-1) 학교나 선생님이 성적이나 가정형편 등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학교는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학교는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을 실시할 경우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는 응답하지 마십시오)	①	②	③	④	⑤
2-4) 학교는 두발길이를 규제한다. (*초등학교 학부모는 응답하지 마십시오)	①	②	③	④	⑤
2-5) 학생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 또는 학급 전체의 소지품 검사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학교는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등교하지 못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2-7) 자녀가 성적 때문에 학교생활을 힘들어 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학교에 상담실과 상담 교사가 있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9)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0) 학교 급식은 위생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2-11) 학교는 급식 개선에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2) 학교에서는 학생이 아플 때 보건실을 이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2-13) 학교나 선생님이 소수 학생(장애, 다문화, 빈곤, 한부모, 조부모, 운동선수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다음은 학교 폭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3-1) 최근 1년간 귀하의 자녀가 다른 학생(선후배 포함)에게 맞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2) 최근 1년간 귀하의 자녀가 다른 학생(선후배 포함)에게 언어 폭력(심한욕설, 비하적 표현 등)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3) 최근 1년간 귀하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학생(선후배 포함)간 폭력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다음은 학생 자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4-1) 학교와 선생님은 학생회나 동아리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2) 학생회 공간이 별도로 있다.	①	②	③	④	⑤
4-3) 학생회가 정기적으로 열린다.	①	②	③	④	⑤
4-4) 학급대표나 학생대표로 출마할 경우 자격 제한 조건(성적, 출석 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5) 학교는 학생에게 영향을 주는 학교정책에 대해 학생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6) 학교는 학생회가 주관하고 기획하는 행사(운동회, 축제, 수학여행 등)를 실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다음은 징계 등의 절차에 대하여 묻습니다.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1) 벌점이나 징계를 받을 경우, 학교나 선생님은 그 이유를 설명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2) 징계 절차에서 학생의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다음은 체벌에 대해 묻습니다.

6-1) 귀하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는 체벌이 있습니까?

- ① 있다(6-1-1에도 답변) ② 없다(6-2번으로 이동)

6-1-1) 있다면, 체벌의 형태는 무엇입니까?(중복 답변 가능)

- ① 회초리 ② 신체 이용(손, 발) ③ 벌(팔굽혀펴기, 운동장 뛰기) ④단체 기합

6-2) 귀하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들은 언어폭력(심한욕설, 비하적 표현 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① 있다(6-2-1에도 답변) ② 없다(7-1번으로 이동)

6-2-1) 있다면, 얼마나 자주 한다고 생각합니까?

- ① 가끔 한다(월 1회) ② 자주 한다(주 1회) ③ 매일 한다

7) 다음은 자녀의 학교 밖 생활에 대해 묻습니다.

7-1) 귀하의 자녀가 다니는 학원에서 강사가 때리거나 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① 있다(7-1-1에도 답변) ② 없다(7-2번으로 이동) ③ 학원에 다니지 않는다(7-2번으로 이동)

7-1-1) 있다면, 얼마나 자주 한다고 생각합니까?

- ① 가끔 한다(월 1회) ② 자주 한다(주 1회) ③ 매일 한다

7-2) 귀하나 다른 가족이 자녀를 때리거나 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① 있다(7-2-1에도 답변) ② 없다(8-1번으로 이동)

7-2-1) 있다면, 얼마나 자주 한다고 생각합니까?

- ① 가끔 한다(월 1회) ② 자주 한다(주 1회) ③ 매일 한다

8) 다음은 인권교육에 대하여 묻습니다.

8-1) 학교는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인권 관련 교육이나 간담회를 실시한다.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8-2) 학교에서 인권교육은 어떤 형식으로 실시합니까?(복수 응답 가능)

- ① 외부강사 강의 ② 가정통신문 전달 ③ 사이버(동영상, 인터넷 활용) 교육

8-3) 학교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이 학생인권 신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9) 학생인권옹호관제도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 ① 들은 바 없다 ② 들은 바는 있으나 잘 알지 못한다
③ 잘 안다 ④ 잘 알고 있으며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10) 다음은 귀하의 자녀에 대해 묻습니다.

10-1) 귀하의 자녀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여자 ② 남자

10-2) 귀하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인문계고 ④ 특성화고 ⑤ 특수목적고

10-3) 귀하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는 혁신학교입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10-4) 귀하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지역은?

- ① 도시 ② 농어촌

10-5) 귀하의 자녀와 같은 학년의 학급은 총 몇 학급까지 있습니까?

- ① 1반 ② 2반 ~ 3반 ③ 4 ~ 5반 ④ 6반 이상

10-6) 귀하의 자녀가 학교생활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공부 ② 무관심 ③ 선생님의 차별대우
④ 가족문제 ⑤ 학교 폭력(언어폭력, 따돌림 포함)

10-7) 하루 평균 가장이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산책, 식사, 대화, 놀이 등 단, TV 시청은 제외)

- ① 거의 없다 ② 30분 이내
③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④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⑤ 2시간 이상

10-8) 여러분의 자녀가 해당되는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중복 답변 가능)

- ① 운동선수 ② 한부모가정 ③ 다문화가정
④ 장애인 ⑤ 해당사항 없음

11) 기타 학생인권에 대해 느낀 점이나 건의할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